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출년월일 : 1995. 1. 24.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5. 1. 17
- 다. 회부일자 : 95. 1. 17
- 라. 상정일자 : 95. 1. 23

2. 제안설명 요지(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가. 제안이유

94. 12. 20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함.

나. 주요골자

각 기관별(구청장, 보건소, 동)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백창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4. 12. 31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에 규정하여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제정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토론요지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구 실정에 맞추어 적정 조정함이 타당하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후 정원의 총수를 결정토록 바람.

5. 수정안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1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안)

의안 번호	95-2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본청 : 399명
2. 보건소 : 46명
3. 동 : 337명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